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업체나 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 기술지원, 자금의 융자와 보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보장구의 제조·수리업의 허가) ① 보장구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보장구의 종류, 허가기준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제조·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4조(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등) 주무부처장관은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품목을 고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5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① 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수리하거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대여·수리 또는 비용지급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이하 "재활보조기구업체"라 한다)에 대한 생산장려금의 지급,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보조기구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그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자금의 융자와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등) ① 주무부처장관은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8조(보장구제조·수리업의 허가취소등) ① 시·도지사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제조·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복지시설 및 단체

제109조(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이 입소 또는 통원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및 훈련을 받거나 요양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장애인재활시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입소 또는 통원하면서 장애종별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및 훈련을 받는 시설

2. 장애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이 입소 또는 통원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및 훈련을 하거나 요양하는 시설

제110조(이용시설) 장애인이용시설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통원하면서 상담, 치료, 훈련, 체육, 독서, 출판 등의 재활활동과 사회참여활동, 여가활동 및 지역생활 개선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통원하면서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상담, 훈련,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등 종합적 재활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받는 시설

2. 장애인의료시설: 장애인이 입원 또는 통원하면서 장애에 대한 예방, 조기발견·조기치료, 긴급치료, 재활치료 및 일반치료를 위하여 설치된 병·의원 및 진료실

3.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이 통원하면서 체육활동을 통한 기능회복과 사회적, 정신적 재활을 도모하는 시설

4. 장애인도서시설: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주로 도서 등의 열람·대여를 통하여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재활을 도모하는 시설

5.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욕구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시설

6. 중간시설: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가 종료되고 사회복귀단계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화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시설

7. 자립생활센터(CIL):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교육, 훈련, 상담, 취업알선, 전문기관알선, 주택알선 등 당사자의 욕구에 따른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시설

제111조(가정시설) 장애인가정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동안 입소 또는 통원하면서 일시적으로 보호받거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직업, 교육 등에 관한 상담 및 훈련 등으로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의 보호자가 출근, 생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애인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낮동안 장애인이 입소하는 임시 보호시설

2.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의 보호자가 출장,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애인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단기간 장애인이 입소하는 임시 보호시설

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소수의 장애인이 개인적, 사회

적 일상활동을 통한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 자립훈련, 직업 및 교육 등에 관한 도움을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제112조(직업시설) 장애인직업시설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한 경제·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장애인보호작업장: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호적 조건하에서 일하는 시설

2. 장애인근로시설: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하는 시설

제113조(기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전용숙박시설, 출판시설등 기타 장애인복지시설은 관련 부령이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설로 한다.

제114조(유료장애인복지시설) ① 유료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 또는 통원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로 분류된다.

제115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의 인권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련 부령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그 종류·규모 등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의료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 설치기준 및 기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 이용대상 및 그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신교의 제한) 시·도지사는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① 제1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②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시설설치 신고를 한 때

③ 제127조의 1항 및 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제117조(신고사항의 변경)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8조(시설운영의 개시등) ①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운영자는 1월 이상 시설운영을 일시중단하거나 재운영 또는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일시중단 또는 폐쇄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소자들을 타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시설의 폐쇄조치) ① 제115조 제2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③ 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④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제120조(시설의 우선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사회통합

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관련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 필요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관련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한 자에 대하여는 기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122조(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① 장애인의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연금지급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이하 "복지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복지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체육회에 대하여는 조세를 감면하고, 복지체육회에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한 자에 대하여는 기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123조(복지산업진흥원) ① 보장구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복지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업무, 조직·운영,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비용의 수납) ①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외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통원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련 부처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으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5조(비용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1장 전문인력

제126조(전문인력의 자격) ① 관련 부처장관은 장애인복지 전문영역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주무부처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1급 재활사회사업가: ㉠ 4년제 대학에서 재활학과, 장애인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자격 시험에 의해 재활사회사업가 자격을 취득한 자 ㉡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통령령에 의한 재활사회사업가 자격 취득을 위한 단기교육을 필한 자 ㉢ 2급 재활사회사업가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을 가진자는 1급 재활사회사업가 자격취득 시험자격을 가진다 ㉣ 4년제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관련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대통령령에 의한 재활사회사업가 자격을 위한 단기교육을 필한 자. 단 현재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통령령에 의한 재활사회사업가 자격을 위한 단기교육을 받은 후 1급 재활복지사 자격을 취득한다.

2. 2급 재활사회사업가: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의 장애인재활학과, 사회복지학과(사회사업학과)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령에 의한 재활사회사업가 자격취득을 위한 단기교육을 필한 자.

단, 현재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통령령에 의한 재활사회사업가 자격취득에 대한 단기교육을 받은 후 2급의 재활사회사업가 자격을 취득한다. 장애인복지 관련학과에 대한 세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재활의사: 재활의학을 전공하고 국가고시에 의해 재활의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1급 물리치료사
가. 4년제 대학교의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학회나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의해 1급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물리치료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다.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2급 물리치료사가 상기 시험에 의해 1급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2급 물리치료사: 4년제 또는 2년 대학에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한 자

6. 1급 작업 치료사

가. 4년제 대학교의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학회나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의해 1급 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학원에서 작업치료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2급 작업치료사가 상기 시험 또는 규정에 의해 1급 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2급 작업치료사: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에서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한 자

8. 언어치료사: 4년제 대학교의 언어치료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학회나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의해 언어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나 대학원에서 언어치료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9. 직업평가사: 4년제 대학교의 직업재활학과 또는 재활학과를 전공하고 국가 고시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학회나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의해 직업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거나 직업재활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10. 직업재활교사: 4년제 대학교에서 직업재활학을 전공한 자로서 국가고시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학회나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의해 직업재활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거나 직업재활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11. 재활간호사: 4년제 대학에서 간호학과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의해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간호사 자격취득을 위해 단기교육을 필한 자, 또는 간호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취득을 위한 단기교육을 필한 자

12. 재활복지공학 설계사: 4년제 대학에서 건축, 교통, 통신, 신체공학, 일반공학 등을 전공하고 국가고시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학회나 단체의 규정에 의해 복지공학 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취득에 관한 단기교육을 필한 자

13. 특수체육사: 4년제 대학교에서 특수체육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학회나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의해 특수체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거나 특수체육학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14. 수화통역사: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국가고

시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학회나 단체의 규정에 의해 수화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자

15. 심리치료사

가. 4년제 대학에서 임상심리학, 심리재활학 등 임상심리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학회나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의해 자격시험에 의해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임상심리 또는 심리재활학 등 관련 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16. 직업생활상담사

가.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직업재활학, 심리재활학,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등을 졸업하고 국가고시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학회나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의해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취득에 관한 단기교육을 필한 자

나. 심리학 또는 직업재활학, 심리재활학 등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17. 보장구사: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보장구학과를 졸업하거나, 실무 경험이 7년 이상 있는 자가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의 규정에 의해 보장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

18. 1급 행동치료사

가. 대학원에서 교육학, 재활학, 행동치료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나. 4년제 대학에서 교육학, 재활학, 행동치료학, 행동치료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다. 행동치료사 2급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

19. 2급 행동치료사: 대학에서 교육학, 재활학, 행동치료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가진 자

20. 수치료사: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로부터 수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제127조(전문인력채용 및 배치) ①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장애인복지 관련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자라야 한다. 단 시설 설립자로서 현재 시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는 상시종사자의 5분의 2이상을 재활복지 관련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자로 채용하

여야 한다.

③ 장애인복지의 통합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영역별 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

1. 의료재활 영역: 재활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행동치료사, 재활사회사업가, 수치료사, 특수체육사, 재활간호사 등 의료재활 관련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교육재활 영역: 특수교육교사, 치료교육교사, 교육상담교사, 직업재활교사 등 교육재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영역: 직업평가사, 심리평가사, 재활사회사업가, 직업기능훈련교사, 행동치료사 등 직업재활 관련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4. 정신위생 영역: 정신의학과 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정신위생관리 관련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특수전문영역에 필요한 각종 관련 전문인력의 배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전문인력의 지위) 장애인복지관련 전문인력은 장애인복지 수요자를 위한 전문적인 업무를 전문기간의 협력적인 체계 하에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타인의 부당한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129조(전문인력의 권한) ① 관련 전문인력은 노동관계법에 따르는 기본적인 보편타당한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관련 전문인력은 자기가 직접 지원하는 수요자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30조(전문인력의 의무) ① 관련 전문인력은 인권을 존중하고 전문가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② 관련 전문인력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해 전문적인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관련 전문인력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자기결정능력이 없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 및 노인일 경우에는 그 친권자나 사실상의 보호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장 보칙

제131조(장애인의 날)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이 들어 있는 주를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제132조(조사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의료, 교육, 직업, 소득 및 사회환경 등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며,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등록) ①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및 기타 관련 부처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수첩을 교부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호자는 당해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경우에 수첩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장애인진단명령을 거부하거나 제7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수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장애상태의 변경에 따른 장애급수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인진단을 명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급수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에 중앙장애인판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장애인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수첩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⑧ 장애인의 등록 수첩의 교부와 반환 장애인진단 및 장애인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제134조(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135조(심사청구) ①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136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7조(조세의 감면)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과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138조(자료의 제공) ① 주무부처 장관은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9조(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유·무상 임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 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법인 등에게 국·공유 토지 및 시설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및 시설을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

업 관련시설 설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장 벌칙

제1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에 입학을 거부한 자.
2.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업주
3.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장구의 제조수리를 업으로 한 자
5.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의 반환명령을 거부한 자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3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4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때
3. 제75조 규정에 위반한 때
-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처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처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주무부처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사회복지 재정현황과 과제

김진수

1. 서론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 주도 하의 경제개발정책에 의하여 '전성장 후분배'의 논리에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소득 1만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좌표를 새로이 설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또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 측면에 많은 관심이 보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사회복지 자체에 대한 당위성 문제로 인한 논란의 여지는 없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동안 등한시해온 사회복지에 대한 관계부처 및 기관 그리고 학계에서의 입장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의 규모가 너무 낮아서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 순위에서 두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으며 소위 복지국가로 불리는 선진국의 재정 적자 및 복지 위기를 들어 사회복지 발전의 한계성을 부각시켜 이에 대한 반대 또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이 양측 주장은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평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회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회복지의 범위를 협의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 입장에서는 광의로 해석하여 서로 엇

갈리는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를 비교함으로써 두 주장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고, 사회복지의 개념을 국제사회와 비교함으로써 현재 우리 상황을 조명하여,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절한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제시를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의 개념 및 범위

사회보장(soziale sicherheit, social security)의 개념은 이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 관련 전문가 그리고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 및 사회적 정황에 따라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발전하였고, 제도적 능력이 이루어지면서 정착되었으며, 사회복지 이외의 다른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제도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제 비교에 있어서도 많은 국제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특수성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분류 목적에 따라 그 범위와 분류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일된 기준에 의한 정확한 객관적 비교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의 협의의 의미에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며, 광의의 의미에서는 협의의 범위에 공중보건, 보훈, 사회복지 관련 기타

제도로 학교급식, 교과서 무료 배부, 공공직업훈련 및 소개 등을 포함하고 있다.¹⁾

국가별로 볼 때 차이 국가별 정치성향에 따라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먼저 독일의 경우 협의의 사회보장 범위에 공중보건과 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비, 실업대책비, 보건위생대책비, 사회복지, 생활보조 등 5개 분야로 광범위한 범위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OECD의 경우에는 협의의 사회보장 범위와 공중보건에 교육을 추가한 범위를 사회정책으로 정의하는 반면에 EU의 경우에는 범위를 좀더 넓혀 협의의 개념과 공중보건, 교육과 기타 급여로서 직업훈련, 주택관련 급여, 기업복지 등 매우 폭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표1〉 사회보장의 범위와 영역

① 사회보장의 범위²⁾

• 협의의 사회보장

(1) 사회보장	(2) 공적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	----------	-------------

• 광의의 사회보장

(1)	(2)	(3)	(4) 공중보건	(5) 보훈	(6) 기타제도
-----	-----	-----	----------	--------	----------

* (6)에는 사회보장 관련제도, 이를테면 학교급식, 교과서 무료 배부, 공공직업훈련 및 소개 등이 포함됨, 그런데 ILO(1989)의 기준에서는 (6)이 제외됨.

② 사회정책(Social Policy)의 대상분야:

• 독일등의 경우

(1)+(2)+(3)	(4)	(7) 주택
-------------	-----	--------

• 영국등의 경우

(1)+(2)+(3)	(4)	(7)	(8) 교육
-------------	-----	-----	--------

- 1) 다만 ILO기준에서는 기타 관련제도를 제외하고 있음, 권순원, 1995
- 2) 권순원, 신복지구상과 복지정책의 개혁방향, KDI정책연구, 1995: 노인철, 김수봉, 사회복지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3) 우리나라 경우는 교육비를 사회개발비와 구별하여 별도의 세출항목으로 취급하고 있음, 박종기, 「적정복지예산규모연구」, 1994: 노인철, 김수봉, 사회복지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1995.

• OECD의 경우

(1)+(2)+(3)	(4)	(8)
-------------	-----	-----

• 단,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이란 개념을 사용

• EU의 경우

(1)+(2)+(3)	(4)	(8)	(9) 기타급여
-------------	-----	-----	----------

• (9)에는 직업훈련 및 주택에 대한 급여, 기업복지 혹은 기타의 자선제도 등이 포함되는데 EC는 사회보장 급여(Social Protection Benefits)라는 넓은 개념을 사용.

• 우리나라의 경우

(1)+(2)+(3)	(4)	(7)	(8)	(10) 인력개발
-------------	-----	-----	-----	-----------

• 사회개발 분야라고 불리는데 예산·결산서에서는 여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지역사회개발을 추가하고 있음.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정부재정 통계연보(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의 재정지출 분류체계에 의하면 지출항목 중 사회비 항목으로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 및 지역 사회 편의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사회보장 및 복지부분은 사회보험을 위시하여 실업, 출산, 가족 및 아동수당, 기타 공공부조 및 서비스 등이며, 주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위하여 우리나라 재정통계와 IMF 기준 사회비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자료로 국제 비교를 하도록 한다.³⁾

3. 사회보장비 지출 추이

우리나라 정부 재정지출의 기능적 분류는 크게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사

회보장 및 복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기타 지역사회개발, 제반 경제사업으로 구분된다. 이중 보건과 사회보장 및 복지부분은 보건관련 부문을 포괄하고 있으며,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⁴⁾

〈표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는 1994년 현재 11조548억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240,534원을 사회보장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GNP 대비 3.7%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1981년 2% 미만에서 1982년 2%, 1989년 2.6%, 1990년 3.1%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⁵⁾ 그런데 사회보장비 지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이 74.1%, 공공부조가 15.6%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가 10.4%로 사회보험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출구조는 1962년 사회보험이 16.2%, 공적부조 81.1% 사회복지서비스 7.7%에 비하면 사회보험의 급속한 성장한 것으로 일견하여 보면 선진국 형태의 사회복지체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⁶⁾

특히 최근의 지출구조 특징인 공공부조 지출 절대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진 반면에 사회보험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이유는 1980년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의 도입 및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이 1998년 도시 자영업자에 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의료보험은 급여기간의 연장 및 급여대상의 확대 등 급여의 수준

및 질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1999년까지 전사업장으로 확대, 고용보험은 1998년까지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사회보험의 연차적 성숙화 과정에 따라 사회보험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⁷⁾

한편 1962~1994년 사이에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예산 지출은 연평균 25.6%씩 증가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중앙정부 일반회계 지출증가율 2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기간별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율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로 나눈 지수는 제6차 5개년 계획 기간이 164.2, 제5차 5개년 계획기간이 139.0, 그리고 제4차 5개년 계획기간이 129.3으로서 사회복지 증가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⁸⁾

이러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의 빠른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의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거대한 국방비와 경제개발비 지출로 인한

〈표2〉 중앙정부 사회보장 지출 추이(단위: %)

	1971	1975	1980	1985	1990	1995
총재정지출	6631	20,208	92,558	184,431	421,391	918,521
		(34.2)	(35.6)	(15.1)	(18.3)	(17.0)
보건	175	334	1,817	4,198	11,237	20,401
		(18.3)	(41.7)	(18.9)	(22.7)	(13.1)
사회보장 및 복지	264	1,000	5,060	8,392	29,923	78,620
		(45.9)	(43.8)	(17.7)	(29.2)	(22.2)

* ()는 평균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 4) 보건부분은 병원, 진료소(개업의, 치과의 보조의), 공중보건, 약제, 인공보철, 의료장비 및 기구 기타 건강관련 처방, 보건 및 의료전달 시스템과 관련된 응용연구와 실험개발, 그리고 미분류 보건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노인철, 김수봉, 1995.
- 6) 선진국의 사회복지 지출구조는 사회보험이 70~80%,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20~30%로 구성되어 있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al Yearbook, 1996.
- 7) 국민복지기획단, 21세기 복지사회, 1995
- 8) 노인철, 김수봉, 1995.

여 사회복지 관련 지출 절대액이 낮은 데 기인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사회보험의 늦은 도입으로 인하여 미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사회복지비 지출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부담한 부분은 1994년도 현재 35.620억원으로 GDP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부예산 지출 중에서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지원금, 보훈 및 근로복지를 제외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출은 전체 사회복지 지출의 21.8%인 7.761억원으로, GDP의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군인연금의 경우 국고부담이 6.920억원으로 여기에 지출하는 재정이 우리나라 전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출의 90%에 이르고 있어, 전체 사회복지 지출 규모의 낮은 수준과 함께, 사회복지 지출이 일부 계층에 집중됨으로써 자체 내의 질적 수준도 낮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4. 사회복지 재정의 국제비교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은 복지에 대한 개념이나 범위 그리고 영역이 다양한 것처럼 각 국별 자료의 범위가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의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그 나라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를 국민총생산(GDP)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⁹⁾ 이 비율은 양적 편익이나 이에 대한 절대적 만족도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국가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른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로서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제비교에 있어서 단순한 국민총생산에 대한 사회복지재정 비중 비교는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

9) 권순원, 1995.

즉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같은 시기의 사회복지재정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만불인 점을 감안하여 선진국의 1만불 시대의 사회복지재정을 비교하도록 함과 아울러 절대적 개념으로서의 적정수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표3〉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만 달러인 1995년과 선진국이 1인당 GDP가 1만 달러 시대의 사회복지재정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표3〉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유럽의 독일, 프랑스 및 영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자유시장경제의 대표적인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사회복지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은 일본의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이 분석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인당 GDP가 1978년에 1만불에 이르렀는데 이때 사회복지지출은 25.3%에 이르렀고, 프랑스는 1979년에 23.5%, 영국은 1986년에 17.7%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1978년 9.1%에 이르렀다. 일본은 1984년에 11.5%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1995년에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소득 1만달러 시대의 사회복지지출 수준 비교
(단위: US달러, %)

	1인당 GDP	사회복지지출/GDP
독일(1978)	10,470	25.3
프랑스(1979)	10,916	23.5
영국(1986)	10,066	17.7
미국(1978)	10,128	9.1
일본(1984)	10,440	11.5
한국(1995)	10,076	3.7

주: 일반정부 기준이며, 사회복지지출은 보건, 사회복지 및 복지지출의 합임.
자료: OECD, New Orientation for Social Policy, 1994.
World Bank, The World Bank Atlas, 1995.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al Yearbook, 1996.

한편 사회복지재원에 대한 국민 부담률에 대한 국제비교는 조세 부담률과 사회보험 부담률의 합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⁰⁾ 표는 주요국의 소득 1만 달러 시기의 국민부담률을 비교분석한 자료이다. 우리나라는 국민부담률이 20.7%(조세부담률 19.4%, 사회복지부담률 1.4%)로 선진국의 55.6%(프랑스:1978), 52.8%(독일:1978)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영국(1986)의 37.0%(조세부담률 30.9%, 사회복지부담률 6.1%)나 미국(1978)의 29.4%(조세부담률 24.0%, 사회복지부담률 5.4%)와 비교하여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한편 사회복지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은 일본(1984)의 27.6%(조세부담률 19.2%, 사회복지부담률 8.4%)보다도 낮은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부담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미성숙에 기인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5. 사회복지 적정 수준 및 과제

〈표4〉 소득 1만달러 시기의 국민부담률 비교

	1인당 GDP	국민부담률 (단위: US달러,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복지부담률
미국(1978)	10,128	29.4	24.0	5.4
독일(1978)	10,470	52.8	38.2	14.6
프랑스(1979)	10,916	55.6	38.9	16.7
영국(1986)	10,066	37.0	30.9	6.1
일본(1984)	10,440	27.6	19.2	8.4
한국(1995)	10,076	20.7	19.4	1.4

주: GDP 대비 비율임.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6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94

10) 일반적으로 재원은 조세수입, 세외수입, 사회보험료로 구성되나, 세외수입항목의 불규칙성과 소득수준 증가와 연관성이 작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1) 보험개발원은 약 12.5%, 보건사회연구원 20%, 국민복지기획단 25%로 발표하고 있음.

가. 사회복지의 적정 수준 확보

어느 국가에서 절대적 사회복지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이원화된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제시하는 데 여러 이견이 제시될 수 있다.

사회복지 적정 수준에 대한 분석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사회복지재정 변화 추이를 회귀분석 또는 시계열 자료분석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과 지출 전망 추이를 분석하여 재정 전망을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적정수준을 목표치로 정할 경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출 증가율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분석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적정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는 국민복지기획단(19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공통적으로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수준을 찾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외에 민영보험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보험개발원(1997)에서도 시도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접근방법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당 부분 우리나라 현황을 국제사회의 기준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재정수준은 다 른 선진국의 1만달러 시기의 평균과 비교하여 볼 때 12.5%~25%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¹¹⁾ 또한 사회복지재정 적정 수준을 보험개발원은 GDP대비 18.1%로 보건사회연

구원은 13.4%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적정수준 기대값에 대한 각각의 접근은 모두 일정부분까지의 도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통적으로 단기간 동안의 막대한 재정확보의 한계성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개발원을 제외한 경우¹²⁾ 사회복지재정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데, 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미국·일본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복지기획단은 국제평균의 1/2 수준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보건사회연구원의 기준은 국제평균의 약 42%를 기준으로 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사회복지재정 지출을 매년 20%~25% 이상 증가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도 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국제평균인 GDP대비 9%의 1/3수준인 3%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매년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을 20% 증가시켜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복지기획단의 경우 25%의 증가를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적정 수준은 국제사회

평균치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평균수준의 절반에서 1/3 수준을 목표로 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사회복지재정 지출을 매년 20%~25% 증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의 모색은 사회복지를 주장하는 입장이나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수용한 현실적인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재정 지출의 증가를 위하여서는 정부세출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노력과 함께 정책적 지속성이 요구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낮은 조세부담률의 점진적 증대와 세무행정의 개선을 통하여 과세대상의 저변 확대와 지하경제의 근절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의 성숙화를 통한 취약계층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나. 취약계층 보호 강화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목적은 빈곤 퇴치라 할 수 있다. 빈곤 퇴치는 이에 대한

〈표〉 사회복지예산변화추이(1995~1998)

년도	1995	1996	1997	1998 (예정)
정부예산 (증가율)	51,881,113	60,123,100 (16.0%)	67,578,600 (12.4%)	70,360,300 (4.1%)
복지부예산 (정부예산대비)	1,983,896 (3.82%)	2,370,744 (3.94%)	2,851,200 (4.2=2%)	3,170,500 (4.51%)
취약계층예산 (정부예산대비)	861,028 (1.65%)	1,073,259 (1.78%)	1,400,149 (2.07%)	1,562,856 (2.22%)
의료보호	292,416	342,894 (17.3%)	477,692 (39.3%)	549,562 (15.0%)
생활보호	301,383	360,595 (19.6%)	435,736 (20.8%)	496,530 (14.0%)
사회복지서비스	267,229	369,770 (38.4%)	486,721 (31.6%)	516,764 (6.2%)

자료: 보건복지백서, 각년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2) 보험개발원은 적정수준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민영보험의 참여 및 확대를 주장하고 있음.

예방이 중요하지만, 빈곤 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 살아가도록 하는 배려가 우선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빈곤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공적부조 부문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빈곤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를 알아보도록 한다.

1995년 1인당 GNP 1만불을 달성한 이후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런데 전체 증액 수준은 증가한 반면에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은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8년의 취약 계층에 대한 예산 편성에 기초 자료에 의하면 각 세부 사업별로 일정 기준도 마련되지 못하고, 그 동안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1997년 예산과 1998년 예산을 비교하여보면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998년도 사회취약계층 복지예산(안)

	97	98	증감	
공적부조	거택보호	301,079	342,709	+13.8%
	시설보호	54,686	58,813	+7.5%
	자활보호	617	1,052	+70.5%
	의료보호	447,692	549,562	+15.0%
	교육보호	66,852	59,577	-10.9%
	기타	12,502	34,379	+27.5%
소계	883,428	1,046,092	+18.4%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129,972	182,385	+40.3%
	장애인복지	96,008	99,154	+3.3%
	아동복지	44,576	43,981	-1.3%
	보육사업	133,707	109,481	-18.1%
	여성·재가부문	17,980	18,034	+0.3%
	기타			-1.2%
소계	64,478	63,729	-1.2%	
계	1,370,149	1,562,856	+14.0%	

자료: 보건복지백서, 각년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위 표에 의하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은 97년에 비하여 14%를 증액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예상 증액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재정 취약성에 비추어 국제 수준의 절반 또는 40% 수준에 이르기 위한 최소한 증가율인 2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재정의 미흡 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취약성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있어서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98년에는 14.0%를 증액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수준을 1인당 133천원에서 162천원으로 최저생계비를 100%까지 향상 시킬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의료 보호에 있어서 15%를 증액하여 급여기간 연장등 급여 부문 확산에 대한 재원 확보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노인복지시책의 강화로 98년 7월부터 경로 연금을 도입하여 재정 증가율이 40%증가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장애인 복지 부문은 3.3%로 증액하여 물가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장애인 복지부문이 실질적 퇴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놀라운 것은 97년에 2,607억원이었던 노인과 장애인을 제외한 기타 복지서비스부문에 98년에는 2,352억원을 책정함으로써 오히려 9.3%가 감소한 점이다.

이는 아동 및 여성 등에 대한 결정적인 복지정책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정책적 의지를 전혀 신뢰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복지에 대한 몰이해가 향후 복지정책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이 경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사회취약계층을 정책의 우선 순위 두어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나 철학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은 선거를 앞두고 집권에만 관심을 둔 왜곡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이 지속될 경우 사회복지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하고, 한낱 정치적 종속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을 전제로 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전제로 한 계층별 복지수준의 향상 방안이 별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정책 제언

사회복지는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따른 부의 척도에 대하여 질적 부문의 평가를 하는 지표로서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실질적인 '삶의 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할 것이다.

경제 발전에 따른 1인당 GNP가 경제적 풍요의 양적 척도라 하면, 사회복지재정 비중은 삶의 질적 척도로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게을리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분석에는 커다란 한계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분석을 사회복지재정 전체로서 분석한 나머지 그 재정 자체 내에서의 질적 문제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는 점이다. 특히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지출이 취약계층보다는 일부 특수계층에 편중되거나 사회보험체제가 안정된 계층위주로 계속해서 운영될 경우 사회복지의 오히려 기득권 계층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역(逆)재분배현상을 나타낼

것이고, 오히려 사회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정의 확보 및 증대의 초점을 취약계층에 두어야 하는 구조적 형평성 확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재정 확보 및 증대가 매우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의 효율성은 이에 비판적 입장의 주요 관심사임을 감안하여 효율성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복지재정 확보 및 증대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운영체계의 정책적 선도사업의 시행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같은 위험에 대한 결과로서 사회복지의 접근이 다른 경우, 이를 과감히 연계하고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함으로써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재정 확대와 함께 사회복지의 효율화가 동시에 진행될 때, 사회복지의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복지문화의 성숙도 기대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복지기획단, 한국형복지모형정립과 정책과제, 1995
- 권순원, 신복지구상과 복지정책의 개혁방향, KDI정책연구, 1995
- 경제기획원, 예산 및 결산개요, 각년도와 한국은행.
- 노인철, 김수봉, 한국사회복지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보사연, 1995.
- 박종기, 적정복지예산규모연구, 1994
- 보험개발원,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1997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 일본 대장성, 재정금융통계월보, 각년도(예산특집호).
- OECD, New Orientation for Social Policy, 1994.
- World Bank, The World Bank Atlas, 1995.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al Yearbook, 1996.
-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94

월간조선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심판청구

신청인 이장희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5의 1 선경아파트 5동 202호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공동대표이사 방상훈, 방우영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조선의,

가. 표지란 중 우측 상단부분 및 차례란 중 우측 상단부분에 각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대제목 부분은 특호 고딕체 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각 가로로 각 게재하고,

나. 본문의 제96면 이하의 기사란 중 우측 상단부분 지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대제목 부분은 특호 고딕체 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22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20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이름은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제1항 기재의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매 월 금 1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가. 신청인은 1973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1975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1980년에는 서독 키일(Kiel)대학교 박사과정을 각 졸업하였고 1984년 동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그동안 육군 제3사관학교 교수부 법학과 교수(1975년~1978년 예비역 육군 대위), 국립안동대학 법학과 교수(1978년~1987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1987년~현재)를 역임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대한국제법학회 감사, 이사, 부회장,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겸 정책위원장, 운영위원장, 통일원 정책자문위원(1990년~1992년), 제6기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1993년~1995년), 제7기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겸 북한인권특위 간사(상임위원)(1995년~현재), 한국정

신대책협의회 법률자문위원(1993년~현재), 사단법인 아세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1991년~현재),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정책자문위원(1995년~1997년), 경찰청 치안연구소 연구위원(1996년),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정책자문위원(1996년~1997년) 등의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나. 피신청인은 일간신문 및 월간잡지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월간잡지인 『월간조선』을 발행하고 있는 자인데, 『월간조선』 1997년 7월호에서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의 보도내용

피신청인이 발행한 『월간조선』 1997년 7월호는 그 표지의 중앙 상단부분에서 “추적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관 통일되면 首都와 나라꽃이 바뀌나?”라고, 그 차례의 첫 부분에서 “추적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캠페인 통일되면 수도와 나라꽃이 바뀌나?”, “·광고 문안은 「김일성 장군의 노래」 전문이 실린 책에서 발췌 ·통일원 담당자: 「이 책은 군데군데 오해의 소지 있으나 전체 맥락을 보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각 보도한 다음 그 본문의 제96쪽에서부터 제109쪽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함). - 보도 내용 생략

3. 피신청인이 한 보도내용의 허위성 및 왜곡성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캠페인’이라는 문제 제기 하에 ‘통일되면 수도와 나라꽃이 바뀌나’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의 저서인 『나는야, 통일 1세대』(천재교육사, 1995년 10월)의 내용이 마치 북한의 노선을 미화하고, 나아가 국가의

기본질서 유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통일의 길목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망각하고 대한민국 국가와 정통성을 뒤흔들고 있는 것으로 매도함으로써 신청인을 대한민국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불순한 사람 즉 용공분자 내지 친북인사로 단정하였습니다.

나. 통일원의 권오기 장관은 월간조선 이동욱 기자의 이 책의 용공 시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책은 군데 군데 오해의 소지와 표현상의 문제점이 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책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으며 또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김석우 통일원 차관도 지난 7명의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의 답변에서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책은 크게 어린이가 직접 쓴 ‘통일 후 금금증 체계’ 부분과 ‘전문가의 코멘트’ 부분, 편집진이 쓴 ‘북한이야기(통일정점다리)’ 부분 등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그 중 ‘전문가의 코멘트’ 부분을 집필하였습니다.

(1) 첫째, 이 책의 용공 시비의 주요 부분이 되고 있는 통일 이후 나라 이름, 공휴일, 수도 등의 변경 가능성을 예측하는 소목차 부분은 어린이들에게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이 책을 쓰기 전에 출판사 편집자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선생님께 부탁을 하여 학생들이 통일이 되면 궁금한 것인데 그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도에 대해서는 서울이 최적이며, 공휴일은 통일 이후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이 빠질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위 책 82~83쪽).

(2) 둘째, 초등학교가 통일 이후 나라 이름이 '한국연합국'으로 바뀔 것 같다고 쓴 글을 보고 본서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지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초등학교의 그러한 재미있는 발상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허약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셋째, 통일관이 남한식도, 북한식도 아니라는 비판은 용공 시비론자들이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통일과정을 혼동하고 있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통일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대북한 시나리오가 여러 개이듯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단지 최대한의 노력으로 전쟁만은 피하자는 것이 모든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이 책은 분명히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이며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자유, 인권, 복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국가라고 명백하게 쓰고 있습니다.

(4) 넷째, 김일성 장군 노래들에 관한 북한 이야기는 본책자의 기획 의도와 목차들을 검토한 안기부 산하 내외통신에서 자료를 협조받은 것입니다. 또 본서는 김일성 장군 노래를 해설 없이 신지 않고, 나름대로 해설을 붙여 게재하였습니다. 즉, 유치원이나 탁아소에서조차 맨처음 배우는 노래가 김일성 장군 노래이고, 북한에서는 애국가보다 김일성 장군 노래를 너무 중요시한다고 명백히 서술하였습니다.(본서 30면)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애국가보다 김일성 장군 노래가 더 불리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이미 북한이 얼마나 1인독재체제인가를 설명하는 대표적 자료 중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5) 다섯째, 북한을 살 만한 사회로 미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본서는 또한 북한에서 쓰레기를

계곡에 함부로 버려 북한지역의 환경오염의 심각함, 기차의 지연과 기차 안에서의 소매치기의 활개, 양력 설에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동상을 참배하고 김정일의 새해 연설을 들어야 하는 일, 여행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는 것, TV의 절대적 부족, 청바지가 한 달 월급의 5배로써 북한 경제의 심각한 점, 의료시설과 약의 부족으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 북한 경제의 어려움과 잘못된 점도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보더라도, 어린이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외면하고 북한의 나쁜 면만 보여주어 적개심만 고조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며(그런 반면 월간조선은 적개심을 부추겨야만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북한의 어두운 면도 어린이들에게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통일에 대한 '희망의 꿈'을 심어주면서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을 위해 더 도움이 되는 것임은 건전한 이성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6) 여섯째, 본서가 북한을 공짜로 병도 고쳐주고, 생필품과 집도 공짜로 나눠주는 살 만한 나라로 표현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월간조선』 7월호, 103면), 그러나 본서는 결코 북한을 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서는 책 전체에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의 잘못된 점을 사실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서는 북한의 잘못된 점을 북한을 가능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매우 객관적이고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는 북한 이야기편에서 북한의 초등학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 시절'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 시절'을 일주일에 한 시간씩 배운다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얼마나 북한이 1인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말없이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며 이 사실

은 초등학교에서도 북한의 1인 세습독재체제를 알려주는 대표적 자료로 이미 가르쳐지고 있는 사실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북한이야기편을 보고서 우리 초등학교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허약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18쪽). 뿐만 아니라 본서에서는 쓰레기를 계곡에 함부로 버려 북한지역의 환경오염의 심각함(36쪽), 기차의 지연과 기차 안에서의 소매치기의 활개(66쪽), 양력설에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동상을 참배하고 김정일의 새해 연설을 들어야 하는 일(84쪽), 여행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는 것(96쪽), TV의 절대적 부족(120쪽), 청바지가 한 달 월급의 5배로써 북한 경제의 심각한 점(90쪽), 김일성 집안 중심으로 역사의 왜곡(본서 150, 151쪽),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미래는 신라의 경순왕이나 동독의 호네커의 역할(본서 155쪽), 의료시설과 약의 부족으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156쪽) 등 북한 경제의 어려움과 잘못된 점도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지 북한의 정치범 인권침해 실상을 소개하지 않은 것은 편집 순서상 제2권 사회부분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처리'에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본서 기획서 46번 참조). 이와 같이 본서는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의 평화적 통일을 상정하며 쓰인 책입니다. 이것은 본서 17쪽에서 "어떠한 체제가 되든 자유·인권·사회복지가 귀중히 여겨져야 한다"는 데서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7) 일곱째, 본서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출판사에서는 이 책의 목차부분에 대해 안기부에 검토 요청은 물론 자료 협조를 받았으며 책 출간 이후에도 출판사에서는 안기부에 5부를 보냈고, 언론기관과 관계기관에 책을 송부했고 『조선일보』에

는 신간서적으로 소개까지 되었으며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관지인 『민주평통』도 크게 본서를 소개하였으나, 이처럼 이 책은 유통되는 2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을 정도로 본서는 이미 충분히 검증을 받았습니다.

라. 이와 같이 본서는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의 평화적 통일을 상정하며 쓰인 책입니다. 처음 출간되었을 때는 문제 제기는커녕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겨냥한 참신한 통일교육용 책이라고 통일원을 비롯한 많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칭찬받던 이 책이 이와 같이 일부 극우적 시각에 의해 2년 후 어느 날 갑자기 용공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가공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교류 협력을 논하는 사람은 모두 친북이나 용공으로 몰리는 분위기 때문에 아무도 통일에 대해 정론을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류 협력을 관장하는 통일원은 물론 정부의 평화적 통일론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충분히 따른 책조차 일부 시각에 의해 용공으로 몰리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가 평화통일에 대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평화적 통일을 위한 건전하고 자유로운 통일 논의를 봉쇄하는 우리 사회 일부의 매카시즘적 분위기를 강력히 경계해야 합니다.

마. 피신청인이 위 책을 용공도서로, 또 신청인을 용공인사 또는 친북인사로 매도하는 데 대하여 과연 그런가? 우선 피신청인이 전제하고 있는 용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 상으로 굳이 말한다면 위 법 제7조 1항은 그 소정의 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일용 그 표현물의 내용이 그와 같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이 될 정도가 못되거나 해악이 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1년 개정된 위 법은 제7조 1항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고 주관적 구성 요건을 추가한 점과, 구법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를 삭제하는 대신에 "국가 반란을 선전·선동한 자"라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했는 바, 따라서 용공성은 본서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반란을 선전·선동한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본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적 기본질서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월간조선이 흑백논리로 본서를 매도한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인 '다원성의 상호존중'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바.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이 사건 보도는 허위 또는 왜곡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그 명예와 신용 등 인격을 현저하게 훼손당한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이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소명방법

- 1. 소갑제1호증(잡지기사: 『월간조선』 1997년 7월호)

첨부서류

- 1. 신청서 부분 1통
1. 위 소명방법 1통
1. 중재물성립증명서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997. 8.

신청인 이장희

서울지방법원 귀중

월간조선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제 50 민사부
판 결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Status. 1997. 10. 31. 판결선고 인, 1997. 10. 31. 원본영수

사 건 97카기6337 반론보도
신청인 이장희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5-1 선경아파트 5동 202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김기중, 김성남, 김일수, 김철준, 박연철, 박원순, 박인제, 박주현, 안상운, 이상경, 이석연, 이석형, 장주영, 조용환, 한승헌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상훈, 방우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주석영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조선』의 제 96면 우측 상단부분에 "나는야, 통일1세대"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0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밖의 여백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문 본문을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이름을 16급 고딕체 활자로 각 게재하여야 한다.

- 2. 만약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월 금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조선"의 표지란 중 우측상단 부분 및 차례란 중 우측상단 부분에 각 별지 제2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대체목 부분은 특호 고덕체 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26포인트 고덕체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고, 본문 제96면 이하의 기사란 중 우측상단 부분 지면에 별지 제3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대체목 부분은 특호 고덕체 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22포인트 고덕체 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20포인트 고덕체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의 이름은 26포인트 고덕체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월 금 1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호증, 소갑 제3호증, 소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신청인은 "어린이를 위한 통일 이야기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저서(이하 이 사건 저서라 한다)의 저자인데, 통일원은 1997. 2. 초부터 1997. 5. 말까지 4개월 동안 문화방송과 공동으로 "북한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통일이 된다"는 내용의 통일 캠페인과 공익광고를 하면서 그 캠페인과 공익광고 문안

에 이 사건 저서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여 방송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지인 "월간조선" 1997년 7월호는 제96면 이하에서 "문제제기-통일원의 이상한 통일 캠페인 '통일되면 수도와 나라꽃이 바뀌나?'"라는 제목하의 기사를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여 통일원의 위 캠페인 내용을 소개, 비판하면서 더불어 위 캠페인 내용의 자료로 제공된 이 사건 저서의 몇 부분을 인용하고 이 사건 저서의 저자인 신청인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 제103면에서 "이교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개념을 혼용하는 가운데 체제는 문제가 없으나 사람들의 게으름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공산주의는 평등을, 자본주의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해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평등의 이면에 숨겨진 계급사회나 반인권적 폐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게다가 자본주의도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 큰 단점이 드러난 것으로 설명한다"라고 게재하고 있다.

(2) 제103면에서 "북한의 이야기가 실린 30페이지에는 '장백산 즐기줄기 피어린 자국...'이란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가사 전문이 실려 있다. 그러나 '김일성 장군'이 어떤 인물이고 그가 한국전쟁을 주도한 전범이란 설명은 이 책 전부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게재하고 있다.

(3) 제104면에서 이 사건 보도의 집필자인 신청의 이동욱이 통일원 담당자와 이 사건 저서가 통일원 캠페인으로 제공된 경위에 관한 대답을 하면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 전문이 실려 있고 집도 공짜로 주는 나라로 북한을 묘사한 이 책이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의 인권실상이나 굶주림의 원인, 그리고 김일성이 어떤 인물인지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북한을 묘사한 내용 등에 대해 묻자..."라고 게재하고 있다.

(4) 제106면에서 위 이동욱이 신청인과 대화를 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북한에도 종교가 있고 신도가 5만여명 정도'이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에 관해 공부하는 나라'이고 '물건은 부족하지만 공짜로 병도 고쳐주고 생필품과 집도 공짜로 나눠주는 나라'로 떡을 주듯 가르친다면 이것이 올바른 교육일까"라고 게재하고 있다.

(5) 제108면에서 "국가기본질서 유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통일의 길목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망각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과 정부의 자문교수들, 그들의 그릇된 판단이 대한민국의 국기와 정통성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게재하고 있다.

(6) 제109면에서 통일원장관에 대한 서신 질의에서 "통일원 정책 자문위원인 이장희 교수가 쓴 '어린이를 위한 통일이야기 -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책이 통일 홍보 캠페인의 주요자료가 되었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비판 없이 실려 있고 객관적이라 미명 아래 북한이 살 만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주는 이 책에 대해 통일원 장관은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라고 게재하고 있다.

2.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월간조선에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적 주장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을 것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에서 이미 신청인의 반박내용을 함께 게재하여 신청인에게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법

률 제1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의 제105면 내지 제108면에서 이 사건 저서와 관련한 신청인의 답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답변 게재 부분은 모두 위 이동욱이 이 사건 보도의 구성에 맞추어 질문내용을 선정한다음 신청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고 신청인은 위 질문에 답변하는 것에 국한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위 답변 게재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 중 신청인이 피해를 받은 부분 전부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및 게재방법

반론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은 별지 제2목록, 제3목록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있으나, 반론을 제기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를 고려할 때 신청인이 구하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 중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원문기사 부분의 크기 및 게재 면수, 반론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31.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오석준

판사 서경환

제1목록

“나는야, 통일1세대”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월간조선 1997년 7월호 제96면 이하 “문제제기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 캠페인 ‘통일되면 수도와 나라 꽃이 바뀌나?’”라는 제목 하에 신청인이 지은 책 “어린이를 위한 통일 이야기 ‘나는야, 통일 1세대’”와 관련하여 보도한 기사(이하 문제 기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문제 기사 제103면에서는 “이교수(반론보도 청구인)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개념을 혼용하는 가운데 체제는 문제가 없으나 사람들의 계층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공산주의는 평등을, 자본주의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해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평등의 이면에 숨겨진 계급사회나 반인권적 폐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게다가 자본주의도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 큰 단점이 드러난 것으로 설명한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보도 내용은 이교수가 공산주의가 소멸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도입부분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하여 인용한 것으로서, 이교수는 위 책 22쪽 내지 23쪽에서 위 부분에 이어서 “사회주의 나라들은 거의 무너

졌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그만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도 통일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되는 것은 처음엔 어려움이 좀 있을지 몰라도 역사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2) 문제 기사 제103면에서는 “북한의 이야기가 실린 30페이지에는 ‘장백산 즐기 즐기 피어린 자국...’이란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가사 전문이 실려 있다. 그러나 ‘김일성 장군’이 어떤 인물이고 그가 한국 전쟁을 주도한 전범이란 설명은 이 책 전부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책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실은 것은 북한의 애국가를 소개하면서 북한에서는 애국가보다 오히려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더 많이 불리운다는 현실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3) 문제 기사 제104면, 제106면, 제109면에서는 위 책에서 북한을 공짜로 병도 고쳐주고 생필품과 집도 공짜로 나눠주는 나라로 묘사하는 등 객관적이라 미명 아래 북한이 살 만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고, 북한의 인권실상이나 굶주림의 원인, 그리고 김일성이 어떤 인물인지 등에 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보도 내용은 북한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려고 하는 위 책의 일부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하여 보도한 것으로서, 위 책에서는 북한에서의 상습적인 연착과 기차 안에서의 소매치기의 활개(66면), 양력설에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동상을 참배하고 김정일의 새해연설을 강제로 들어야 하는 일(84면), 청바지가 한달 월급의 5배나 될 정도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점(90면), 북한은 여행의 자유가 없

는 나라라는 것(96면), 텔레비전의 절대적 부족(120면), 김정일은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에 귀순하든지 아니면 동독의 호네커처럼 망명하게 될 것이라는 점(155면), 의료시설과 약의 부족으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156면) 등 대부분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어려움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북한의 정치범이나 인권침해의 실상을 소개하지 않은 것은 편집순서상 제2권 사회부문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처리”에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었다.

(4) 문제 기사 제10면에서는 (통일원 정책자문위원인 이장희 교수가) 국가기본질서 유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통일의 길목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망각하고 있고, (이장희 교수의) 그릇된 판단이 대한민국의 국기와 정통성을 뒤흔들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장희 교수는 대한민국 주도 하에 자유민

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의 평화적 통일을 상정하며 위 책을 쓴 것이다.

반론보도청구인 이장희

제2목록

신청인이 게재를 청구하는 반론보도문

대제목: 월간조선의 왜곡된 보도, 평화적 통일이 그렇게 두려운가

중제목: 한국의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의 저서 “나는야, 통일1세대”는 어린이를 위한 건전한 통일교육도서이다.

본문 — 생략.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¹⁾

소 장

원 고 장 홍 석
 경기 고양시 탄현동 17의 52 동문아파트 101동 1601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조광희, 정연순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54의 14 영웅빌딩 3층

피 고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안우만

손해배상(기)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1) 편집자주: 서울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는 지난 11월 27일 이 소송에 대하여 "국가는 장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대학을 졸업하여 직장을 다니다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시민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피용자인 전경들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한 바 있습니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가.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3조에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사정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4항에는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이러한 불심검문에서 질문을 받는 시민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불심검문의 의의와 방법

규정된 바와 같이,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하며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수사 자체는 아니며 다만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무질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이라는 우월적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에서 그 요건과 행사방법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불심검문을 행하는 경찰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래 검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불심검문의 대상

불심검문의 대상은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자, 죄를 범하였다고 보이는 자, 죄를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이는 자,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 자이어야 하며, 합리적인 근거와 판단을 수반하지 않고 이와 같은 소위 '거동불심성'이 있지 않은 일반시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은 공권력의 남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불심검문의 방법

경찰은 거동불심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자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야 합니다. 질문에는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묻고 소지품의 내용을 질문하여 수상한 점을 밝힐 수 있으나 이러한 질문은 임의수단에 불과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는 동안 수갑을 채우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이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3) 소지품의 검사

경찰은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나 그 소지품 검사는 흉기소지의 조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검사(stop and frisk)로 흉기의 소지 여부를 탐지하면서 가방을 열어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범죄의 고도의 개연성(예를 들어 야간에 범죄발생장소에 근접한 곳에서 불심검문에 걸린 경우)이 없는 한 일반 소지품 검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소지인의 의사에 반하는 소지품의 검사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강제처분법정주의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1997. 6. 10. 7시경에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방학을 이용하여 잠시 귀국한 사촌동생을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앞에서 만나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하여 2호선 1번 출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 당시 시청역에는 전경들이 지하도 입구에 줄지어 서 있었고 젊은 사람과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세워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었으나 시청역 주변은 일상적인 퇴근시민들로 혼잡하였을 뿐 당일 그 시각을 즈음하여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당일 시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지하도 주변 어디에서도 시위나 기타 폭력적인 돌발사태가 있으리라는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원고와 사촌동생이 지하도로 내려가자 전경들이 두 사람을 정지시키고 그중 하나가 원고에게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등은 신분증을 전경들에게 보여준 후 이를 되돌려받으면 바로 가려고 하였으나 전경들은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은 채 다시 원고등의 가방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라. 원고는 당시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 정도의 직사각형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이 가방 안에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문제지 한 권과 노트, 영자신문만이 들어 있었는데, 겉에서 보아도 가방의 크기나 규모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핸드 마이크, 기타 시위용품이나 범죄에 사용될 만한 흉기 등의 범죄용품을 담을 수 없는 가방임이 확연히 드러나는 가방이었고, 소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가볍고 얇은 것이어서 얼핏 보기에는 비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였습니다.

마. 원고는 전경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무조건 가방을 열어보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항의하여 가방 안을 보여달라는 이유를 밝힐 것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가방을 보여줄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바. 그러자 전경들은 규정상 수색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계속 가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

지 않는 방법으로 가방검색을 강요하였습니다.

사. 결국 주민등록증을 돌려받지 못하여 15분 이상 서 있어야만 했던 원고는 가방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고(그중 가방을 열어본 전경: 상경 이영호, 602부대, 전화번호 642-8565), 전경들은 가방안에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음을 보았으면서도 오히려 가방 안에 있던 문제지를 허공에 펼쳐보며 뭐하는 사람인지를 캐물었고 취직시험을 준비중이라는 원고의 말에 '그러니까 짤렸지, 당신같은 사람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이와 같이 말한 전경: 수경 허용호)'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원고에게 퍼부었습니다.

아.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와 더불어 전경들은 마치 원고가 범죄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다른 돌려가며 '이것 찍어봐' 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는 형식상의 지시였을 뿐 자기들끼리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기만 하고 실제로 조회를 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또한 가방 안에 있던 노트를 들고 있으면서 노트와 주민등록증을 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고가 노트를 집으려고 하면 들고 있던 손을 뒤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면서 마치 어린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아 놀리듯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증 및 노트의 반환 거부는 자신들의 검문에 항의하는 원고가 그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하여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임이 분명하였습니다.

차. 원고는 가방을 수색당하고도 그로부터 10여분 이상 주민등록증과 노트를 돌려받지 못하여 검문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전경들로부터 각종 설교와 훈계조의 언사, 비웃음 등을 당했는데, 그 요지는 '당신같은 사람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지금

분위기가 어떤데 어디서 이렇게 나오느냐' 등이었습니다(첨부 진술서 참조).

카. 원고는 검문을 당한 지로부터 30분이 지난 시간에서야 겨우 주민등록증과 노트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고 전경들은 현장을 떠나려는 원고의 뒤에서 '당신같은 사람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짤렸지, 그따위로 사회생활 하겠어'라는 말을 던지면서 모두 같이 따라 웃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전경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첫째, 전경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서 엄격히 요구되는 불심검문 개시의 요건을 지키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아 아무런 범죄혐의점이 없는 시민에 불과한 원고에게 불심검문을 함으로써 원고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불법행위입니다.

둘째, 전경들은 불심검문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시간안에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의 참된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30여분간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경들의 행태는 권한의 남용을 벗어나 사실상 불법구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경들은 소지품검사에 엄격히 요구되는 개시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거부하는 원고를 강제적으로 소지품 검사에 응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의 소지품은 검사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검사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원고에게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검사에 응할 것을 강제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소지품 검사의 요건과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넷째, 전경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이 건 불심검문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원고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발언을 수십명이 수시로 지나가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역 지하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서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명예와 자존심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여 원고를 사실상 구금하고 강제처분을 한 전경들의 사용자인 국가는 전경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원고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명예의 훼손, 시간손실 등을 입었고 자신의 사촌동생과 대중앞에서 당한 치욕으로 인하여 며칠밤을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홧병증세로 소화불량, 두통 등을 겪어야 했습니다(지금도 소화불량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고가 입은 이러한 손해를 일일이 금전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우나 굳이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1997. 7.

서울지방법원 귀중

사업 및 업무보고 (97년 11월 1일~11월 27일)

I. 모임 현황보고

회원 현황 : 본부 191명(신입회원 5명 포함),
부산·경남지부 27명,
대전·충청지부 10명
총 228명

II. 사업 및 업무보고

가. 사무국 업무 보고

- (1) 10월 정기 월례회 개최 / 10. 31.(금) 오후 6시 30분 민변사무실
- 27명 참가
- 신입회원 5명의 가입 요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임호(연수원 12기), 양태훈(연수원 19기), 김봉석(연수원 19기), 김호철(연수원 20기), 이종필(연수원 23기)
- 북한식량지원에 관한 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후속조치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다.
- 강연: 북한의 문화유산답사기 / 강사: 유홍준 교수(영남대)
- (2) 「양심수문제 긴급토론회」개최 / 11. 7. 오후 4시 성공회 대성당, 민가협, 참여연대 등과 공동.
- (3) 성명서 발표
 - ① '최근의 양심수논쟁에 관하여' 발표 / 11. 3.
 - ②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씨 체포에 관한 논평' / 11. 5.
 - ③ '영장실질심사제의 후퇴를 반대한다' 성명서 발표 및 국회법사위 의견서 배포 / 11. 10.
 - ④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에 관한 의견' 발표 / 11. 14.
 - ⑤ '금융개혁관련법안의 졸속처리를 반대한다' /

11. 15.

III. 상임위원회 보고

가. 기획위원회

나. 회원위원회

다. 출판홍보위원회

라. 대외협력위원회

- (1)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시민단체간담회 / 11. 5. 한국 YMCA 회의실
 - ① 건교부 택시제도개선추진위원회 경과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월급제에 대한 택시사업자들의 완강한 반대와 법집행 건교부의 의지 박약 등으로 현재 교착상태에 있음, 위원회가 무산될 위기에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② 택시제도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공대위 구성의 건.
- 기왕에 추진되었던 시민단체공대위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다.
- 공대위는 건교부와 건교부의 택시제도개선추진위, 택시업계의 노·사측의 압력을 조직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하다.
- 주도권 장악을 위한 공방전보다는 실제적인 시민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도시들의 시민단체의 참여를 형성하여, 전국적 범위의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다.
- 집행위원장으로 김성수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참가단체 중 7~8개를 상임집행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하다.
 - ③ 택시개혁을 위한 향후 시민단체 공동활동의 방향에 대하여
- 공대위의 첫번째 공동활동은 소식지 발간을 통

한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으로 한다. 공대위 출범식을 겸한 제1차 서명운동을 11월 11일 혹은 13일 11시를 기해 서울 YMCA 앞길이나 명동 입구에서 진행한다.

(2) 서준식대표무죄석방공대위

① 향후 사업계획

-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기여하기로 하다.
- 문화단체들을 중심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사전심의 철폐, 아울러 새로 구성된 공진협의 문제를 부각시키도록 하다.
- <레드헌트>를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고, 상영하기로 하다. 감상 후 소감문이나 의견서를 청와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항의서한 형식으로 대대적으로 보내기로 하다.
- 공동변호인단을 대규모로 구성하고, 법률별 쟁점을 정리하여 기획변론을 하도록 하다.
- 실제 재판과정을 통해 법률 개정의 여론을 고조시키고, 이를 위한 토론회등을 배치하도록 하다.

② 국제연대

- 국제단체들을 중심으로 항의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가기로 하다.
- 미국, 유럽, 일본 등지의 동포단체들의 항의를 적극 조직토록 하다.
- 인터넷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결과를 공표한다.

(3)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1차 집행위 11. 19.(수)

오전 8시 인권운동사랑방

① <레드헌트>상영계획

- 전국 100곳 정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상영주최는 공대위로 하기로 하다.
- 11월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12월 10일 전후

의 인권주간에 집중하기로 하다.

- 『씨네21』의 조선휘 편집장과 협의하여 시사회를 추진하기로 하다.

② 의견서발표운동계획

- 사학자 안병욱 교수, 영화평론가 김혜준씨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자료집에 첨부하기로 하다.
- 인권주간에 맞춰 사회각계 원로들의 입장발표를 추동하기로 하다.
- 대중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이후 발표를 추진하기로 하다. 상영장에서 설문지 작업을 병행하기로 하다.

③ 국제연대

- 사랑방 운영위원인 장호순 교수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런던을 경유, 파리에 가 있는 실무자들을 통해 현지 인권단체등을 조직중임.

④ 토론회(또는 공청회) 개최의 건.

- 12월 4일이나 5일경 하는 것으로 하고, 공대위가 주최하는 것으로 하고, 주관은 『씨네21』과 문화정책연대기획단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하다.

(4) 과거청산국민위원회

① 과거청산국민위의 진로문제

- 대선 이후 과거청산사업에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다.
-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다.

② 앞으로의 사업

- 과거청산에 대한 공부모임을 2주에 1회 정도로 진행하고, 참석대상은 각 단체 과거청산 담당실무자와 참석 희망자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하기로 하다.

- (4) 민주연대 대표자회의: 11. 21.(금) 오전 8시 프레스센터 마로니에
 - ① 대표자회의 소집권자를 이창복 의장에서 최영도 회장으로 하기로 하다.
 - ② 총무를 정성희 민주노총 국장에서 이대훈씨(참여연대)로 하고, 단체의 동의를 구하기로 하다.
 - ③ 24일 오전 11시에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 및 대처방향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다.
 - ④ 경제불안과 일자리보장의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행동을 민주연대의 발의로,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12. 6. 정도에 하기로 하다.
 - ⑤ 성명서 발표: '경제난국은 재벌개혁과 공정한 고통분담으로 풀어야 한다' / 11. 24.

마. 국제연대위원회

- (1) 대인지리대책회의보고 및 사업계획: 10. 29.(수) 오후 4시 참여연대
 - ① 모임에 국제법적 측면에 관하여 토론회를 요청하였으나, 능력이 안됨을 들어 거절하였음.
 - ② 발족식 및 기자회견에 관한 건: 11. 6. 오전 10시에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다.
 - ③ 민변의 가입을 전제로 공동대표의 선임을 요청하였으나, 회장님의 대외직책이 너무 많은 관계로 사양하였음.

IV. 상설특별위원회 보고

가. 노동위원회

- (1) 회의: 10. 29.(수) 12:00 호화반점
 - ① 전해투지원대책위, 후원회원 참여요청 건 - 매월 1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위원들에게 거두어 보내주기로 하다.

- ② 포철의 삼미특수강위장정리해고철회 및 고용안정공대위 제12차 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및 성명서, 서명 등 참여요청 건
 - 집행위 결과를 보고하고, '포철의 위장정리해고철회와 고용승계보장' 성명서와 관련해서는 자체 성명서는 발표하지 않고 공동성명에만 참여하며, 서명은 회의참여위원들의 서명을 받아보내기로 하다.

- (2) 회의: 11. 5.(수) 12:00 호화반점

- ① 노동위원회 기획사업 논의
 - 김선수 연구사업부장이 노동법핸드북 발간 계획안을 보고하다.
- ② 택시제도개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건
 - 전해철 대외협력부장이 설명함.
- ③ 11월분 전해투지원대책위 후원금 12만원을 거둬.

- (3) 회의: 11. 12.(수) 12:00 호화반점

- ① 노동법 핸드북 작성
 - 집필원칙과 고려사항, 집필예 등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제목을 『노동법 해설서』로 정하고, 새노동법의 전조문을 해설하기로 하다.
 - 『새노동법해설』의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집필하되,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는 좀더 상세히 해설을 붙이기로 하다.
 - 『노동법 해설서』의 집필원칙과 고려사항, 원고 작성 원칙 등을 정리하여 각 집필자에게 통보하기로 하다.
 - 11월말쯤 집필자 모임을 갖고, 집필기준등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로 하다.
- ② 『96노동판례비평』, 『새노동법해설』판매방안 관련 건
 - 주간 『산업과 노동』에 내지 전면 흑백으로 1달간 광고(광고료 300,000원)하기로 하고, 『매일

노동뉴스』에 전면흑백으로 광고(수시광고, 광고료 100,000원)하기로 하다.

- (4) 회의: 11. 19.(수) 12:00 호화반점.

- ① 12월 전체모임 준비의 건.
 - 12. 13.(토) 15:00 민변사무실에서 주제는 산별노조 전환에 있어서의 법률적 제문제(최원식)와 산별노조추진과정보고(병원노련 최경숙 정책국장) 발제하기로 함.
- ② 노동법해설서 집필자 모임을 12. 3.(수) 저녁 6시 30분에 민변에서 갖기로 하다.
- ③ 한양대병원 노조 차수련 전위원장등 연행과 관련하여서는 시민종합에서 우선 접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다.

- (5) 회의: 11. 26(수) 12:00 호화반점

- ① 민주노총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소송 진행사항
 - 11. 28.(금) 12:00 민변사무실에서 민주노총 김태연 법규부장과 함께 변호인단 모임을 갖고 소송진행방향등을 논의하기로 하다.
- ② 전기협, 자문변호사 요청의 건.
 - 나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맡고, 향후 공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하다.

나. 언론위원회

다. 사회복지위원회

라. 환경위원회

- (1) 회의 11. 12.(수) 20:00 민변사무실
 - ① 『유리스트』 「환경보호의 신전개」(1993. 1.) 중 오오츠카 다다시 교수의 「공해·환경의 민사판례」 발제(박연철 회원) 및 토의
 - ② 수락산 관통 도로 건설 관련 법적 검토 의뢰건

- 김호철 회원이 담당, 처리하고 다음 회의에서 민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다.

마. 사법위원회

바. 통일위원회

- (1) 북한동포돕기민간단체전국회의: 9차실행위원회 회의 / 10. 28. 12시 고향산천
 - ①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현구두 1만 켈레 기증 약속, 보관과 운반 등의 일체사항을 유복림 국장과 이경미 간사가 담당하기로 하다.
 - ② 북한 식량지원은 불교추진위, 홍사단 등 6개 단체가 참여를 확정하고, 구체적 액수등은 추후에 통보하기로 하다.
 - ③ 구교형 간사를 실무전담간사로 결정하고, 각 단체에서 5만원씩의 분담금으로 활동비를 충당하기로 하다.
 - ④ 록펠러재단의 유정에 선생이 제안한 북한 농업구조 개선에 관한 컨소시엄 구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각 단체에 회람한 후 결정하기로 하다.
- (2) 회의: 10. 29.(수) 18:30 민변
 - ① 민족통일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통일관련민간단체 집중워크샵>에 이상호, 유효석 위원을 파견하기로 하다.
 - ② 전국회의의 북한동포식량지원을 1천만원으로 약정하고, 회원들에게 모금하기로 하다.

사. 경제정의위원회

- (1) 회의: 11. 25. 오후 7시 한국회관
 - ① 향후 위원회 사업을 토의함.
 - ② 장기적인 과제로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제'의 연구와 입법화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회원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로 수시로 토의하기로 하였음.

아. 동북아시아특별위원회

(1) 회의: 11. 17. 오후 7시 민변사무실

- 강연: 「장쩌민 체제 하의 중국의 대내외 정책」

강사: 문홍호 교수(한양대 정외과)

V. 임시특별위원회

가. 민변 1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나. 형사자료집발간팀

다. 통합전자주민카드대책특별위원회

(1) 전자주민카드시민사회단체 공대위 긴급확대회의: 11. 14.

① 국회본회의통과를 저지할 수 없는 만큼 정기 국회 이후 발급거부운동을 대비해야한다는 의견.

② 신한국당과 자민련에 대한 항의방문을 갖기로 하다.

③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서는 자민련의 태도 변화가 중요. 좀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

(2) 전자주민카드시민사회단체 공대위 긴급확대집행위원회: 11. 18

① 선거시기대응계획

- 서명운동전개: 전국적인 서명운동의 전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므로 각계인사들을 중심을 이후 발급 거부까지를 내다보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대선후보들에 대해 전자주민카드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 것을 요구하기로, 이와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하다.

② 기타 저변 확대와 여론화 작업, 지역조직 건

설, 발급거부운동,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기로 하다.

(3) 성명서 발표

- 전자주민카드, 반드시 '국민의견수렴' 거친 후에 신정부에서 '책임' 있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 11. 13.

-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11. 17.

- 선거로 표류하는 국정,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 11. 18.

라. 정보통신위원회

마. 미국법연구위원회

바. 5.18특별위원회

(1) 12.12, 5.18 재정신청심문기일진행내용

① 설훈, 정승화씨가 신청인이 된 사건(34, 36호)은 대체로 취하할 의사가 있으나, 현재 이 사건 기록에 접근할 수가 없어 기소된 내용과 불기소된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하하기는 어렵다고 진술

② 정동년씨 및 인재근씨가 신청인이 된 사건(35호, 37호)에 관하여는 이미 기소된 부분 및 당시 국무위원 내지 국보위원이라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된 자들에 대하여는 취하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5.18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재정신청을 유지할 부분이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기록을 접하지 못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진술

③ 법원에 기록이 이송되지 않았음을 밝힘.

④ 일부 기소 후 다시 작성한 제2차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과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법원에 협력을 요청, 승낙을 받음.

성명서

최근의 양심수 논란에 대하여

우리는 최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양심수 석방' 관련 발언과 관련하여 여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이나 법무부, 일부 언론 등에서 우리나라에는 양심수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발언 내용을 문제삼고 나서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쓰이고 있는 양심수라는 용어는 자신의 정치적, 사상적 신조나 그로 인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실정법 위반 여부와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고, 양심수에 관한 국제기준은 국내 실정법보다 상위기준인 것이다.

양심수 문제에 관하여 가장 권위있는 기구 중의 하나인 국제사면위원회 기준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수의 양심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며, 실제 위 기구에서 발간하는 인권연례보고서는 작년에만 우리나라에서 450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고 그 중 많은 수가 양심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자신의 정치적 신조에 따른 행동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을 가지고 있고, 이 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정당성과 적용상의 인권침해문제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총재의 발언을 기회로 양심수를 매개로 한 사상시비를 벌이는 것은 정략적 목적에 따라 의견 공표마저도 봉쇄하거나 악용하는 작태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권력을 탈취하여 우리나라를 장기간 독재의 질곡에 빠져 있게 한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사면논의조차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심수문제는 균형상으로도 당연히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양심수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지금 이번 사태를 앞장서서 호도하고 있는 주체들은 양심수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마저 막아 버리는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1997. 1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성명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씨의 체포에 관한 논평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어제 이루어진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압수수색과 서준식대표의 연행은 상식 없는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가감없는 반영이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고자 하는 영화제조차 가로막고 심지어 그것을 빌미로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대표를 연행하는 사태는 우리의 인권 현실이 어느 지경에 이르러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술표현의 자유는 그 한 부분이며, 인권영화제는 정당한 권리 행사일 따름이다. 이런 당연한 권리 행사에 대해 당국은 행사의 원천봉쇄라는 비상식적 대처로 일관하였고, 행사 강행을 빌미로 보복적 법집행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국이 내세우는 예술작품에 대한 사전심의와 일부 작품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그것을 빌미로 영화제 자체를 가로막는 행위는 세계의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권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이며,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우리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당국에 요구한다.

법원에 의해 이미 위헌임이 자명해진 사전심의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검열'을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인권영화제에 대한 모든 탄압을 중지하고 서준식 대표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그동안 정부가 외면하고 소홀히 해온 인권문제에 전심전력해온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와 서준식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정부의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7. 11.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성명서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후퇴에 반대한다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하여 구속영장 발부시 담당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못하여 정치권 일각에서 이를 축소하는 논의가 일고 있어, 피의자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시행 초기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의 남발이라는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성과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실로 작지 아니하다.

이러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시행 초기에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일부 인사들이 수사상의 애로나 형평성을 이유로 이 제도를 비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행상의 보완조치들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제도의 의의를 폄하하거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치권 일각에서 제안한 의원입법을 보면 피의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피의자 신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꺾어내기만 남기고 형해화시키는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영장을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사법부의 권능을 제한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판사에게 신문 요청을 하는 것을 수사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억압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통제방법이 없어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에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정치권 일각에서의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 제도의 실제적인 발전을 위한 형사사법 관계자들의 논의를 지켜보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1997. 1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성명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의견

국회의원 28인이 제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당초 기습적으로 제안된 개정안인데다 그 내용에도 문제가 많아 한창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원회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과 본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개정안은 그 절차와 내용의 모든 면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인권보장을 침해할 소지가 많아 제안자들과 검찰을 제외한 모든 단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의 본질과 인신구속의 원칙에 관련되는 기본법의 내용을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둘러 통과시킨 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

의결된 개정안은 처음 제안된 내용보다 피의자의 권리를 더 제한하는 형식으로 개악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가중된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고쳐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제안자거나 검찰의 본래 의도가 영장실질심사와 영장기간를 대폭 낮추어 강제수사를 통한 수사편의를 확보하겠다는 데에 있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우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 및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한 지 한 해를 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졸속한 방식으로 개악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는 그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 나라의 민주적 법치주의가 퇴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란다.

1997.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중)

의견서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의안661)에 대한 민변 의견

수신: 국회 법사위원 귀하

1. 현행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제 인권 수준에 걸맞는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으며,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승복을 유도하는 데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구금된 피의자가 정식 구속되기 전에 판사를 대면할 권리는 선진 법치국가에서는 예외없이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이고, 현행법은 이를 임의적인 것으로 인정하여왔으나, 오히려 필수적인 절차로서 정착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법발전방향인 것이다.
3. 그러나 금번 제기된 형사소송법 중 개정안에 의하면 피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바, 이는 법관이 국민에 대한 인신구속 여부에 관해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고, 직접심문요청포기를 둘러싼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강요, 가혹행위, 부정협상 등이 예상되어, 국민의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조인들은 물론 국내외의 인권단체와 많은 국민들의 적지 않은 저항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다.
4. 현재까지의 제도 운영과정중 피의자 호송에 관한 경찰인력의 비효율적 운용, 구속적부심사제도 등 타제도와의 관계의 미확립 등 몇 가지 실무적인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점은 법의 개정 없이도 충분히 그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따라서 우리는 금번 형사소송법 중 개정안에 반대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6. 오히려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법관이 직권으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고, 동시에 피의자의 심문청구권도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항중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의 부분을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가족,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997. 1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성명서

금융개혁관련법안의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

최근의 한보 및 기아사태 등 연속된 대기업의 부도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대외신인도 악화 등으로 인하여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중 특히 한국은행법 및 금융감독원설치법이 금융개혁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형태로 입법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민변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이번 한국은행법 및 금융감독원설치법안은 내용면에서

첫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을 감독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통화가치 및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해 마련된 중앙은행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으며,

둘째,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이미 금융, 예산, 조세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어 관치금융이 심화될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또한 위 법안의 입법절차를 살펴보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의 적정성"이 무시되고 있는바,

첫째, 이번 국회에 제출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정부안뿐 아니라 한국은행 청원안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이외는 법안 심사제에 있어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둘째,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려던 한국은행등 관계기관의 직원을 국회 정문에서 제지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연행, 구금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국회는 내용면이나 절차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원설치법을 이번 국회에서 졸속으로 입법하기 보다는 중앙은행제도가 국가 경제질서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을 인식하여 금융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7. 11.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성명서

이장희 교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논평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검찰은 공안물이를 중단하라

우리는 11. 26. 이장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기각된 데 대하여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조건도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실질 내용에 있어서도 이장희 교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부분도 없다.

한편 이장희 교수의 글에 이적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은 일부 언론에서 이 글을 문제삼을 당시부터 제기된 것이고, 이장희 교수의 글에 이적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하여 법원이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이 사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검찰의 무리한 법집행이 부부간첩사건을 계기로 대선 정국에서 공안물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미 검찰은 이장희 교수의 경우이외에도 광주대 박지동 교수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진보적 의견이나 행동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왔다. 또한 검찰의 이러한 영장 청구가 부부간첩사건을 계기로 하여 형성된 사회 분위기를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보도를 통하여도 검찰의 그러한 의도는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법집행 태도는 우리 사회의 학문 연구 등을 위축시킬 것이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을 계기로 검찰이 보다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7. 11.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이달의 민변 정기구독회원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 변론, 여론 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직된 전문 법률가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소속회원들의 성과물을 매월 『이달의 민변』이라는 월간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외부 인권단체 자료와 법학자, 인권운동가의 글도 함께 게재함으로써, 법률·인권지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변 회원들에게만 배포되던 『이달의 민변』을, 통권 제10호(97년 7월호)부터 비회원에게도 판매합니다.

책값 권당 3,000원 / 1년 정기 구독료 30,000원

12.12, 5.18 판결 평석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18 특별소위원회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압력으로, 이른바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997. 4. 17. 대법원에서는 전두환·노태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역사적 본보기가 된 이 판결에 깊이 관여하여온 민변에서는 판결에 대하여 조속히 검토하여 문헌으로 남겨둘 것을 예정하였고, 이제 『12.12, 5.18 판결 평석집』의 발간을 통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의미를 더욱 확실히 하여두고자 합니다.

차례: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 12.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 / 내란죄의 종료시기 - 공소시효의 기산점 / 내란목적살인죄의 적용요건 / 전·노 비자금과 포괄적 뇌물죄 / 5.18 판결, 그 미완의 과제

신국판 198쪽 / 값 4,000원

1996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996 노동판례비평』은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젊은 노동법 교수, 노동법 전공 판사들의 1996년 대법원 노동판결 분석서입니다.
 책의 제1부에서는 1996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판례공보에 게재된 134건의 판결성향을 분석하고 분석대상이 된 판결의 목록을 게재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시민법의 형식적 평등원리를 실질적 평등원리에 따라 수정하여 불완전한 시민사회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신국판 392쪽 / 값 8,000원

* 위 책의 정기구독 및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구좌로 입금하시고 민변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상업 431-07-107297 최미희 / 구입문의: 민변 사무국(02-522-7284)

이달의 민변 97년 12월호(통권 제15호)

발행일 97년 12월 15일

발행인 최영도

편집인 출판홍보위원회

박원순 이석태 조용환 박성호 차병직

이백수 정연순 정종섭 염규홍 최미희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 522-7284 팩스 522-7285

천리안 m321

너우누리·하이텔 minbyun7

값 3,000 원

